힐스테이트 화순 2차 근린생활시설 입점자 모집공고

- ▣ 본 근린생활시설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에 대하여는
-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화순군청 도시과- 42819호(2023.11.30)로 분양신고를 득함

미터 범위 내 지역) I 내진설계 등급		에는 파력은 6 <u>1</u> 포 1	7 (7 # 6/11 * 1	그파크립에이시 이	게고무다 국민기다 &
0 = 11 11 1 1 1 1 1 1 1	TIHLOL A R	S O E 31 A /ID	비디디서게버스	70000	HLO A 전 게 A /D

- С 0.176 Sc 1.2 본 건축물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조 제5의 2 규정에 의거하여 내진성능을 확보하였습니다
- · 역골은 1. 단역을 가 당하면 이 있으며,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간 마이 대한 이로움을 목표하였습니다. 본 건물에는 내전설계가 반영되어 있으며,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간 규칙, 에 따라 메르칼리 진도 (MM) 등급 내 이며, 최대지반가속도는 0.204(g)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구조설계(지정, 흙막이, 구조부째, 구조시스템 등)에 반영되어

■ 공급	면적 및	금액								(단위 : m	, 원)		
9.5	용도 층수	수 호수	면 적(㎡)			공급금액			비고				
8 T		포 응수	포ㅜ	전용면적	공용면적	계약면적	대지지분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 1	
		101	68.6481	65.2468	133.8949	23.0509	40,979,000	445,420,000	44,542,000	530,941,000			
	지상 1층 근린 생활 시설 지상 2층	1층		102	80.0798	76.1124	156.1922	26.8894	47,803,000	519,590,000	51,959,000	619,352,000	
				103	77.3500	73.5179	150.8679	25.9728	46,174,000	501,880,000	50,188,000	598,242,000	
			104	65.0475	61.8248	126.8723	21.8417	38,830,000	422,060,000	42,206,000	503,096,000		
			105	65.0475	61.8248	126.8723	21.8417	38,830,000	422,060,000	42,206,000	503,096,000		
			106	77.3500	73.5179	150.8679	25.9728	46,174,000	501,880,000	50,188,000	598,242,000		
				107	77.3500	73.5179	150.8679	25.9728	46,174,000	501.880.000	50,188,000	598,242,000	
				108	53.9750	51.3009	105.2759	18.1238	32,220,000	350,220,000	35.022.000	417,462,000	
			109	58.0107	55.1367	113.1474	19.4789	34.629.000	376,400,000	37.640.000	448.669.000		
			110	64.5981	61.3976	125.9957	21.6908	38,562,000	419,140,000	41,914,000	499.616.000	분인	
이글 시설		111	48.2588	45.8678	94.1266	16.2045	28,808,000	313,130,000	31,313,000	373,251,000	대상		
		7145	201	68.4637	65.0718	133.5355	22.9889	40,869,000	262,320,000	26,232,000	329,421,000		
			202	66.1300	62.8537	128.9837	22.2053	39,476,000	253,370,000	25,337,000	318,183,000		
			203	55.3455	52.6035	107.9490	18.5840	33,038,000	212,060,000	21,206,000	266,304,000		
			204	55.3455	52.6035	107.9490	18.5840	33,038,000	212,060,000	21,206,000	266,304,000		
		205	66.1300	62.8537	128.9837	22.2053	39,476,000	253,370,000	25,337,000	318,183,000			
		206	66.1300	62.8537	128.9837	22.2053	39.476.000	253,370,000	25.337.000	318,183,000			
		207	60.5313	57.5323	118.0636	20.3253	36,134,000	231.920.000	23,192,000	291,246,000			
		208	37.4544	35.5988	73.0532	12.5765	22.358.000	143,510,000	14.351.000	180,219,000			
		209	71.5478	68.0031	139.5509	24.0245	42,710,000	274,130,000	27,413,000	344,253,000			

- 면적 표시방법을 중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 단위인 ㎡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평형 환산방법 : 형별 면적(㎡) X0.3025 또는 형별 면적(㎡) / 3.3058)

 ◆ 상기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화장실, 창고 등 궁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상기 전용면적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 내·외벽의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됨.

 ◆ 상기 호수보기는 청약신청자 및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호실당 대지지분은 대지면적을 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촉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조기와 인공 수 이용.
- 증감이 있을 수 있음. ●상기 실별 계약면적과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 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공급

1,282,7937 1,219,2396 2,502,0333 430,7392 765,758,000 6,869,770,000 696,977,000 8,322,505,000

- 면적 및 대지지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화장실, 복도, 계단실, 공용 출입구, 참고 등)의 면적은 호실(점포)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 당점 후 미계약, 계약 취소 또는 해제 등의 사유로 미분양 점포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에서 임의 공급함.
 당첨 후 미계약, 계약 취소 또는 해제 등의 사유로 미분양 점포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에서 임의 공급함.
 상기 공급금액은 부기가치세 포함 금액이며, 각 점포 공히 소유권이전 등기 비용, 취득세 미 포함된 가격임.
 상기 모급금액은 부기가치세 포함 금액이며, 각 점포 공히 소유권이전 등기 비용, 취득세 미 포함된 가격임.
 상기 공급금액은 상인계획승인의 변경, 필지의 합병 및 분할, 확정 측량 등 인허가 과정상 다소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0.1% 이내 면적 변동 시 분양가격의 가감정산은 없음.
 상기 공급금액 및 공고 내용은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사업주체 분양사무실로
- 확인해 주시기 바람.

용도	주요 사용용도					
근린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슈퍼마켓, 일용품(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바 닥면적의 함계 1,000㎡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바닥면적의 함계 300㎡ 미만인 것)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은 제외) 등 라. 의원, 지과의원, 한의원, 참출원, 집골원, 조산원 등 마. 탁구장, 채육도장(바닥면적의 합계 500㎡ 미만인 것)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등(바닥면적의 합계 1,000㎡ 미만인 것)				
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기. 일반음식점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바닥면적의 합계 300㎡ 이상인 것) 다. 학원, 교습소 등(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라. 체력단현장, 당구장, 에어로박장, 골포연습장 등 (바닥면적의 합계 500㎡ 미만인 것) 마. 종교집회장, 공연장 등 (바닥면적의 합계 500㎡ 미만인 것) 바. 부동산중개업소, 사무소, 금융업소 등 (바닥면적의 합계 500㎡ 미만인 것) 사. 사진관, 표구점, 독서점, 동물병원 등				

공급방법	공개 청약 추첨 분양 방식						
청약조건	- 최초 분양공고일 (2023.12.04)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 (제외국민,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법인에 한합니다. - 거주지역 및 입주자저축(정약 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에비당점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미계약 물량 발생 시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제/항에 따라 사업주체에서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예정입니다. - 청약신청 접수 후 취소는 불가						
	1. 청약신청 2023년 12월 09일~ 2023년 12월 16일	구비서류	본인 신청시	①, 창약신청서(청약장소 비치) ②, 청약자의 도장 및 신분증 ③, 주민등록등본 1통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주 신고사실증명서) -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사실증명서) ④, 청약신청금 납부영수증(지정계좌 무통장 입금증) ⑤, 청약신청금 환불받을 통장 사본 1부(청약신청자 명의)			
공급일정	(10:00-18:00) 2. 당첨자 발표 2023년 12월 17일 (14:00) 3. 제약일정 2023년 12월 17일 (14:00-18:00)		법인	(1), 청약신청서 (청약장소 비치) ②, 사업자등록증사본(원본대조필 날인) ③, 법인도장, 대표자 신분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1등 (6), 청약신청금 남부영수증(지정계좌 무통장 임금증) (5), 청약신청금 환불받을 통장 사본 1부(청약신청 법인 명의)			
			제3자 대리 청약시	본인 의 배우자 포함 모두 제3자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 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①,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용도:청약신청접수 위임용 1부) ②.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및 서명 또는 도장 ③.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청약신청장소에 비치)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청약신청장소에 비치)			
청약장소	전남 화순군 칠충로 141-7, 상가126호						
신청자격	개인: 제한 없음 법인: 현재 법인 또는 임직원이 관계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청약신청금			500만원				
납부방법	납부방법 : 청약계좌 무통장 입금만 가능 ※ 무통장 입금시 총·점포 및 청약신청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예시 : 101호 청약시 → 101홍길동)						
THO LATED							

- 납부계좌 - 1 《 제반 서류는 청약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 일시 및 장소는 추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 환불 대상 : 청약결과 당첨자를 제외한 신청인

- 1) 번호 내성: (정박결과 당점사를 세되한 신정인) 2) 환불 일시: 3220년 1일 해정보부터 순차 진행 (시정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음) 3) 환불 방법: 청악신청금 영수증 반납 및 환불요청서 작성 후 신청자 명의의 계좌로 환불 4) 청악신청자에 대한 정악신청금 향불 시 기간이자는 지급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5) 당점자의 청악 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오니 계약시 청악신청금을 제외한 금액만 준비하시기 바라며, 필히 청악신청서 및 청악신청금 영수증을 지참하여야 함.

우리은행 1006-901-540171 [예금주 :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 대금납부방법 분양가의 85% 분양가의 5% 납부일자 계약 체결시 2024.01.09. 입점 지정기간
- 우리은행 1006-901-540171 [예금주 :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납부계좌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는 계약서에 명기된 상기의 계좌로 납입하여야 하며. 계약서 작성 시 계약자 확인란에 반드시

- 게 되지 않으로 보이 가입어에 있다.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지 않을 시에는 서울보충보험(주)의 분양보증 대상이 되지 않음. 중공/입점에정일: 2024년 3월 (예정) 입점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입점일이 입점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실입점 지정일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인정되지
- ය... 대지소유권은 건물소유권이전과 별도로 지적공부정리가 완료된 후 이전함.

- · 데시고구전는 단글로그구입이면의 글그로 시극하구이라기 근표한 수 있다. 1) 계약자는 사업주체의 승인을 얻어야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음. 2) 계약구 10% 납부 이후 분양권 전매 및 권리양도 기능 함. 3· 소유권 기전하듯기 완료이전 분양권 권리양도는 가능하나,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이행 및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계약물건 취득 인정 시(분양대금의 90%이상 납부한 경우) 권리양도(전매)는 불기능함.
- 4) 분양권 전매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점임을 표현하는 경우 없음. 5) 분양대급 미남, 언제료 미남시에는 전매가 불가능함. 6) 분양전 대는 생기 개설 등 생기 분양한 전에 변환 이 기능하다. 이에 대하여 계약자는 어떠한 0.01도 제기할 수 없음. 5) 분양대급 미남, 언제로 미남시에는 전매가 불가능함. 6) 분양권 전매는 생기 규정에 드불구하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관계 법령 제, 개정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음. 7) 분양권 전매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책임을 저야함.

- 1) 신청자 또는 계약자는 계약 체결시 현황(배치도, 평면도 등), 분양공고, 점포용도, 상가계약서 등 기타 상가공급에 관힌 모든 사항에 대해서 신청 또는 계약 전에 완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 또는 계약자에

- 있음.
 2 계약신청 시 하위 서류제출. 미자격자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진행하였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및 고발조치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또는 계약자에게 귀속됨.
 3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신청한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함.
 4 호당 공급면적과 대진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상 특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5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채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계약을 해지하며 임의 분양함.
 6 본 근린생활시설은 실제로 입점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 상가 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7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 등기는 입점일과 관계없이 지연될 수 있음.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음.
- 있습기. 9) 계약체결 후 부득이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조항에 따라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함
- 9. 계약세월 후 부득이 예약이게 되는 경우 계약소양에 따라 계약급에 해당이는 급액을 취약되는도 충제함.
 10. 계약체결 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시성우취에 즉시 시면 주민통록등본 포함)으로 통보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통보 누락으로 인한 계약자의 손해에 대해서 사업주체는 일절 책임 지지 아니함.
 11) 아파트 및 오피스별용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소, 어린이집, 경로당, 작은도서관, 주민운동시설 등)은 근린생활시설 분양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어때한 권리행사 및 권리주장도 할 수 없음.
 12) 주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 인근 시설물의 변경과 배치구조 및 총·호실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ㅜ BCB. 13) 근린생활시설의 입주 시기와 공동주택의 입주시기는 다를 수 있음. 14) 본 그리생활시설의 공사 중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점시기 등이 지연될
- 수 있음. 15)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기 바라며 현장여건 및 주변 환경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향후 어떠

- 15)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기 바라며 현장여건 및 주변 환경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향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6) 자제의 품질, 품기 제조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17) 영업에 필요한 모든 부대시설은 계약자의 부담임.
 18) 입점지정기간 개시일부터 발생하는 수선유지비, 장기수선 충당금 및 공동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제부담금은 입점 여부에 관계했이 계약자가 부담함.
 19, 분양된 점포에 관한 제반사항(영업하기, 점포관리)은 계약자의 책임으로 관리하여야 함.
 20) 간판 등 옥외설치물은 계약자 부담으로 보행자, 아파트 입주예정자의 민원이 없도록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파트 단지 및 상기의 미관을 감안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제반관리는 근린생활시설 (가칭)자지관리위원회(이하 "차치관리위원회") 및 아파트 관리사무업체와 협조하여야 함.
 21) 학원교습소 등으로 영업을 원하는 분은 "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인가 최소면적 및 조건을 확인한 후 신청하기 바라며 인허가에 따른 제반사항은 계약자 분인이 처리하여야 함.
 22) 입점 지정기간 최초일부터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제반관리는 근린생활시설 자치관리위원회가 하여야 함.
 23) 근린생활시설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화순현대지역주택조합의 소유권 보존등기 완료 후 계약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시행되어야 함.

- %) 건물 형태 및 위치에 따라 외풍으로 인한 소음이 있을 수 있음
- ☼) 건물 명태 및 위지에 따라 외종으로 인한 소음이 있을 수 있음
 ② 본 공고 및 카다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은 인쇄 과정상 학2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은 분양사무실로 문의 바람.
 ③) 근란생활시설의 명칭은 입주 시 본 공고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분양 시 신청자 및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므로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③) 사용검사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각 실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사용검사 전·후 최종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용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함.
 ②) 각종 홍보물 내용이나 선계계명 등 보실 내용을 보급되었다. 보조는 기본에 보조되었다.
- 해야 함.

 ② 각종 홍보물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③ 관 주도의 계획에 의한 주번 개발 계획은 관련 인ㆍ허가청 주관사항으로 사업주체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획이 변경될
- 두 있음. 34) 본 근린생활시설의 판매 시점에 따라 분양조건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람.
- 3) 본 그린생활시설의 판매 시점에 따라 분양조간은 변통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람.
 3) 본 그린생활시설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2202.211.개정) 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점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2202.211.개정) 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점에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로 부과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30 「인지세법」 제3조제1항체1호 및 같은 법 시행구취 제3조에 의거하여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수례(전매)계약서는 인지 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로서 과세대상이므로 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 하는 인지세별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계약서 에 기재된 설지거래가격 (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우자의 인지세 납부의 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37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부가기차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일반과세자)을 하고 사업주체에 통보하여 세급 계산서를 발급받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함, 또한 부가기차세 한급 가능시기 등 기타 자세한 사망은 관할 세무서에 민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38) 계약자는 지방세법 기준에 따라 잔금 납부일 또는 소유권이전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
- 30 게작자는 시청에급 기관에 따라 전금 답구될 또는 오류권이인될 중 빠른 필도부터 00월 이내에 취득제를 진고 및 답구 하여야 함.

 설계관련 유의사항
 1) 계약 전에 사업가진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전체적인 단지 및 주변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장 여건 미확인 및 주변 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본 근립생활시설의 구조 및 성능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 주택법 시행규칙 13조 5항에 의거 경미한 사항 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는 경우에 대한 이 의로 제기하 소 어오
- 크를 제기될 구 없다. 3 근란생활시설 전단도로는 지형으로 인한 경사로로 설치되어 있어 비 또는 눈에 의한 물 튀김, 비산먼지, 소음 각종 환경 권이 침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또한 외벽, 창호 등의 청소비용 및 가림막 등 추가 시설물을 요청할 수 없음
-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5 공동주택 출입구 및 차단기, 경사로(난간포함), 응벽, 문주, 주차장 출입구, 지상주차장, 지하 환기를 위한 시설물
 (/A 등), 쓰레기 분리수거함 등 공용시설 등에 의해 일부 실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아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6 건물과 건물사이의 보행자 통로, 주변 도로 등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도로 인접 및 주변부지의 공사로 인함 소음 및 진동이 발생 할 수 있음.

 7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계약자는 현장 확인, 접근로 단차, 외관 및 내부마감제 등 기타 제반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 확인 및 숙지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해 추후 발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계약자의 책임으로 추후 사업주체 및 사공사에 있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시공사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8) 공용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인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 시 대지 공유

- 지상사에 일제의 이의을 세기말 수 없음.

 8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소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 시 대지 공유 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9 광역도로, 도시계획도로 등 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지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는 귀해사유가 없음.

 10 본 사업부지 외 인근의 신설・확장 도로는 인하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합 및 시공사는 귀해사유가 없음.

 11 본 근린생활시설 주변 학교, 공원, 도로(보도 포함) 인접 등으로 인한 및 공해, 소음 및 진동, 분진, 약취, 침수 피해, 조망권, 사생활권 침해 및 기타 외부인 통행에 대하여 입주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2 사업계획수인 당시 계획된 소음자가 주변 지역여건의 변화로 건물 완공 후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차량증가로 인한 입주 소음에 대하여는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13 대지 경계정시측량 및 확정측량 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인하기의 변경, 사업승인 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물건의 단지배치, 단지 내 도로 선형, 조경(수목, 시설을 포장 등) 각종 인쇄물과 흥보물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공급면적 등이 계약체결 이후 입주 시 까지 일부 면접을 수 있음.

 14 단지명칭 및 상가 호수, 외부색채와 외부상세계획 등은 관계가관과의 협의 (액체심의, 경관심의 등을 포함)결과 및 법규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5 근립생활시설 인접 조경, 조경수 삭제위치는 단지 조화를 고려하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6 대지 인접보기를 하게 함께 함께 함께 함께 함께 함께 함께 함께 있음.

- 10 내지 전답도로 프로 먼저 배려도로의 단계의 기업이라고 함께 모음을 당하는 기업에 함께할 수 있음.

 17 계약 이후 입점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하며, 입점 후 불법구조물 변경 시 관계법정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으므로 왕자하시기 바람.

 18) 단지 내 도로 등의 경사도 및 단지레벨은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19) 기타 공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데는 변경 사용될 수 없으며, 상가 지하 데는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구조 등에 가장되지 않는 데는 변경 사용될 수 없으며, 상가 지하 데는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구조 등에 가장되었습니다.
- 19) 기타 공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PTT는 변경 사용될 수 없으며, 상가 지하 PTT는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구조 협식이 변경될 수 있음.
 20) 상가의 구조 및 성동 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21) 대지 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 질수 있음. 또한 배치도((''''') 등은 사이 및 추후 디자인 의도, 인하가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2) 홍보물 등으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목도, 화장실, 계단실, 펌프실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의 내용에 준하며, 이로 인해 조합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3) 상가 위치에 따라 조망, 일조랑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성가는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흥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24) 건축합 및 주택법을 중소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침해 및 일조량 감소가 될 수 있음.
 25) 단지 배치 상 전기실, 발전기실, 펌프실, 주차장 급배기시설 (D'A) 및 쓰레기보관소 등의 위치에 따라 일부 상가의 환경 권 등의 침해와 소음, 분진 등의 환경영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상세한 위치 등은 사업승인도서 및 홍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람,

- 잡고하시기 바람. 26)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기용 그릴(DA) 등은 본 사공 시 디자인 및 재질이 변경될 수 있음. 27) 실별 창호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두께 등은 본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실별 창호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누께 등은 본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함. 각종 기계, 환기, 공조, 전기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전 확인하시기 바람. 근리생활시설 및 단지 내 지하주차장, 계획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면적증감 등 설계변경 될 수 있음. 제악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 (인테리어, 가전제품, 부동산중개 등)는 본 사업과 무관하므로 특히 계약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람.
- 32) 근린생활시설 인접 지하에 휀룸, 전기실, 발전기실, 펌프실, 저수조 등이 설치되어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 두 자동. 30 상가에 인접하여 DA설치에 의한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4) 홈페이지, 카다로그,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5) 근원생활시설의 입점 후 주차공간을 이용함에 있어 모든 이용자는 상호간에 불편을 야기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 3) 근단생활시설의 입점 후 주자공간을 이용함에 있어 모든 이용자는 상호간에 불편을 아기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차문제에 관한 다듬히 발생되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사우식의 지도 '감독에 따라야 함. 36) 근란생활시설용 지하주차장은 지하 1층에 별도 조닝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층으로는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음. (승강기 이용 필요 시 외부계단 승강기를 이용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37) 본 공고문에 명기되거나 명기되지 않은 유해시설 및 혐오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8) 단지 복촉, 동축에 아파트, 서축의 창고 등 기존 건축물로 인해 빛, 소음, 분진, 조망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 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제기할 수 없음. 39) 지하주자장 자로 및 출입구 높이는 27m이내로 계획되어 있으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1항 5호에 적합하게 설치 됨. (항후 출입구 높이와 관련하여서는 시공상 높이가 일부 변경 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시기를 시키는 집 마요다./ ▲ 지하수차자 트레치가 시골된 경우 시골부위의 주차구회은 트레치포은 포한하며 트레치가 배며 측면에 시골된 시에는
- 수자단인 비경 시장 세외됨. 세) 사용검사 이후, 삼가 내 시설물, 경관조명, 홍보용 조명, 공용조명, 보안등, 수목관리 등 상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4) 동일인이 인접한 2개 이상의 근린생활시설을 계약하였다 하더라도 진금 완납 전 칸막이벽의 제거는 불가하며, 필요시 잔금 완납 후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함. 43) 본 근린생활시설의 구조 및 성능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구조 및 면적 등이 변경 될 수 이오.

- 45) 근린생활시설 방화, 방범 셔터는 설치되지 않음. 45) 출입구에 추가적인 셔터 문 설치는 불가능하으니, 이점 앙지하시기 바람, 47) 근린생활시설 임전 후 인점자 임의로 북송으로 개조하여 사용할 수 없음. 49) 근린생활시설 내려 백 또는 기둥이 존재할 수 있으니 평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단 호실 사이에는 경량 강반이 선진대표 미교화가 시교되
- 카막이(단열재 미포함)로 시공됨 한 막이 (단열새 미모함)로 시상됨... 석) 근리생활시설 주차장은 총 18대가 예정되어 있으며, 사업승인도서 이외의 진입로 및 주차장 등 기타 부대시설의 추가 확보를 요구할 수 없음. 5) 근리생활시설 전용 외 공용면적은 지하주차장 및 휀룸 등, 복도/화장실, 기계실 및 전기실, 발전기실 임. 5) 공동주택 입주자의 복리증진 및 단지여건에 따라 부대복리시설 올타리 등을 추가 및 변경할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주변의 일부(에는 안내표지판, 화단, 조경수, 조경석, 방음벽, 쓰레기 분리수거함, 자전거보관소, 기감차선, 응벽 등이 생한 및 수, 이오

- 5) 근린생활시설 상부에 옥상녹화. 단지내 도로 등이 계획되어 있어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음. 53) 근린생활시설 외관은 적범한 심의 및 인하가 절차에 따라 설계되었음. 54) 공동주력의 조경수, 주출입구 데크 전입 및 기단 시설물 등에 의해서 근린생활시설 각 호실 내부에서 외부로의 시야가 차단될 수 있으며, 간판 설치 위치 등이 제한반을 수 있으므로 각종 시설물 위치를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각종 시설물 등의 설치 위치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계약자의 책임으로 추후 시공 사업 임생님의 이라로 제기 하고 성당
- 사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55 각 근원생활시설의 시설가운은 사용검사 받은 상태대로 공급하며 이와 관련 추가 또는 변경 등을 조합 및 시공사 축으로 요구할 수 없음. 또한 기타 점포요영에 필요한 제반시설(점포의 칸막이, 진열대, 상ㆍ하수도, 가스배관, 전기시설, 냉난병시설 및 간판 등)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함. (점포별 배수구는 1개소 있으며, 추가 시설 및 이설은
- 계약자 부담임)
 50 각 근린생활시설 내 별도 환기시설(주방배기) 및 냉난방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음. 해당기기 설치로 인한 민원(에어컨 실외기 소음 등) 해결은 계약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함.
 57) 각 근린생활시설의 전기, 수도는 기본용량만 공급하며, 분양 전에 사업주체에 확인하시기 바람. 확인을 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계약자 본인의 책임이며, 추후 당사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용량 증설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의 책임 및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고, 1,000%사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가가 상주 되어야 됨을 숙지하시기 바람) 또한, 근린생활시설의 전기 및 수도는 각 점포별로 검침되어 요금이 개별고지 될 예정이며, 1층 수도계량기는 점포별 천당 내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용시설(화장실 등) 공공요금은 공동관리 하여야함.
 50) 도시가스 배관은 근린생활시설의 인임분기까지만 설치되며, 입점 후 계약자 부담으로 가스공급자에게 공급 신청 후 사용하여야함. 증설 시 비용은 각 계약자가 부담하여야함.
 50) 근린생활시설의 전기는 각 점포별로 검침되어 요금이 개별 부과고지 될 예정이며, 공용시설(화장실 등) 공공요금은 공동관리 하여야함.

- 60) 에어컨 실외기 설치 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어야 하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61) 에어컨 실외기는 미관에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전면 도로에서 보이지 않게 설치되어야 하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62) 에어컨 실외기 외부설치와 관련한 소음 민원이 있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민원 해결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처리
- 하여야 함... 하여야 함... (3) 복도 및 각 실의 점유광간 천장이 기계설비 및 전기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음. (4) 조격식째 사항 및 각종 시설물은 현장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사업승인도서(변경포함) 상의 시설물 또는 조경수목이 상기의 영업에 방해될 우려가 있다하여 이전 또는 철거를 요구할 수 없음. (5) 근립생활시설의 대지는 공동주택 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활을 요청할 수
- 하급. 60) 근린생활시설 주변 도로 및 보도는 지형 여건에 따라 1층 출입구에 경사로 및 계단이 형성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점포
- 별로 바닥 높이가 상이 할 수 있으며 출임문 전면에 경사 및 단차 계단가 생길 수 있음. 이점에 대해 별도의 시공 요청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7) 점포간 바닥 단차 등으로 참호 입구와 개폐 위치 및 출입문의 위치와 개폐 방향은 변경 될 수 있음. (8)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분양 전에 문의하시어 상세한 사항을 숙지하시고,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 (8) 골두 남도에 60공의 대급은 대답 대답 나는 내는 기사 사용에 불편이 있을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수 있으며 한 후 참약 및 계약을 쇄결하시기 바람. 70 위치에 따라 일부 실에 화재 시 필요한 소방실비로 인해 실 사용에 불편이 있을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참약 및 계약을 쇄결하시기 바람. 77 각 점포법 취사를 위한 열원은 LN3(역화천연가스)이며 기본 가스배관(각 점포별 천장 내 분기배관에 밸브마감)만 설치되므로 각종 인하가 사항과 밸브 이후 내부배관 설치, 계량기 설치 및 가스시설 분담금은 점포 입주자가 부담
- 78) 각 점포별 급수,공급배관이 설치되며, 급수배관은 계량기를 설치하고 밸브마감 처리하며 밸브이후 공사는 입주자
- 중사 군으로 시청하여나 임... 70 각 점포에는 별도의 온수배관이 없으므로 필요시 계약자가 별도로 온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80 각 점포에는 기본 급수 및 배수 시설이 임의적인 위치(IM이내)에 설치되며 추후 입점자가 개별적으로 내부배관을 80) 각 점포에는 기본 급수 및 배수 시설이 임의적인 위치(fM 이내)에 설치되며 주후 법위사가 개발의으로 내구매끈을 설치하여야 함.

 10) 주방 등의 시설이 입점하는 경우 배수구 연결 시 그리스트랩 등을 설치(입주자 부담)하여 배수구가 막히지 않도록 조치 후 사용하여야 하여, 용량에 맞게 설치하여야 함.

 20 각 점포텔 설 환기 및 주방배기용 환기성비는 공급되지 않으며 필요시 입점자 부담으로 별도의 환기설비 설치 공사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로 인한 민원 해결은 계약자 부담으로 해결해야 함. (단 별도의 환기설치 설치 공사 시 외부 배출 구 미관을 교리하여 만드시 교리주체와 협의하여 설치되어야 함)

 20) 근리생활시설 공용부(목도 등에는 방난방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임의로 설비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없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0) 각 점포에는 냉난방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필요시 입주자 부담으로 설치해야 함.(설치 공사로 인한 민원 해결 은 계약자 부담의

- 은 계약자 부담)

 5) 근린생활시설 2층은 계단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별도 승강기는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을 확인하여야 함

 6) 점포별 전기 용량은 점포 전용면적 1㎡당 150A로 계획되었고, 점포별 증설이 필요시에는 관리주체와 협의 후 한국 전력에 추가 전기사용 신청 후 한전의 책임분계점에서 점포까지 수익자 부담으로 증설하여야 함.

 5) 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한 CCTV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5) 단지 경계 및 성가 인근에는 전기, 통신 인입을 위한 전주 또는 맨홀 등이 설치되며, 그로 인해 미관이 저하될 수 있으며, 한전, KT등 인입 정책에 따라 각 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6) 경관조명 및 공용시설 조명, 타 판매시설 조명, 개별 판매시설 간판 등에 의해 일부 호실은 눈부심이 발생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유의 사항
- 1) 외국인등이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1) 외국인등이 국내에서 무충산을 취득할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 제출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 취득 신고를 해야 함. 2) 국내에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와는 별도로 『외국한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함. 3) 외국인등이 영리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와는 별도로 『외국인 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투자신고를 하여 투자 기업 등록을 해야 함.

 - □ 보험가입 현황 증권번호 보험가입금액 2,533,241,880원 2024년 02월 28일까지
- 1. 다만, 주계약(분양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위 보험기간에도 불구하고 당해 계약의 실제 사용승인일(분양보증 건축물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승인을 포함)까지 보험책임을 집니다 2. 증권발급 지점 및 연락처 : 혁신영업센터, 02-8671-7708 □ 보상하는 손해 서울보중보함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분양사업자(이하 "보험계약자"라 합니다)가 등 분양공고 및 분양계약 후 보통약관 제4조(보험사고의 발생)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수분양자(이하 "피보험 자"라 합니다)에게 보험증권 및 보통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를 대신하여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의 반환을
- 보험사고라 함은 다음 각호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 회사는 보증채무의 이행방법을 보통약관에 따라

- 1. 보험계약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대위변제·대지급·부도(이상 관련인 정보 포함) 등록 사유가 발생된 때 나. 파산·희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있거나 그 보전처분, 개시결정, 파산선고가 있는 때 다.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경매 등이 신청되거나 개시된 때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 (보험계약자가 제출한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보다 25퍼센트 포인트 이상 미달하는 경우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180일 이상 지연 되는 경우
- 되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미보험자에 정당한 수분양자로부터 분양권을 양수받은 자를 포함합니다)의 책임 있는 사유
 2. 전쟁, 핵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전제지번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4.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험계약자가 대물번째, 차명계약, 이중계약 등 정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체결된 분양계약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2. 입주자모집공고 또는 보양광고(이하 "분양공고"라 합니다)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남부한 분양대금
 3. 분양공고에서 지정한 분양대금 납부계좌 (분양공고에서 지정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회사가 보안대금 납부계좌를 발경보안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
 4. 피보험자가 보기자를 반경당되금의 납부주자, 통지를 통보받고서도 그 남부증지를 통보받은 계절에 납부한 분양대금
- 가 분양대금 납부 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
 4. 피보험자가 회사로부터 분양대금의 납부증지 통치를 통보받으시도 그 납부증지를 통보받은 계좌에 납부한 분양대금
 5. 피보험자가 회사로부터 분양대금이 납부증지 통치를 통보받으시도 그 납부증지를 통보받은 계좌에 납부한 분양대금
 5. 피보험자가 보양자금의 사업 장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분양대금 중 납부 기일이 보험사고일 이후에 해당하는 분양대금
 다만 회사가 분양대금을 관리(보험계약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분양대금은 제외합니다.
 6. 보험계약자가 분양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불이행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역의 예정. 위약금, 위약별, 기타 손해배상 채무 또는 부당이득 반환채무 및 피보험자가 남부한 분양대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7. 피보험자가 대출받은 분양대금 대출금의 이자
 8. 피보험자가 분양대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9. 피보험자가 분양대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0.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전에 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분양대금
 11. 보험계약자가 보양자교에서 정한 분양대금을 조과하여 납부한 금액
 11. 보험계약자가 보양자교에서 정한 입주예정기일을 준수하지 못함으로써 부담해야 할 지체상금
 12. 분양공고에서 정한 건축물 (주역 및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 근란생활시설, 입무시설,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 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홍오토, 발코니 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보증채무이행 청구
- □ 모승재무이행 성구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리고,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회사에 보증재무의 이행을 청구 하여야 하며, 보증채무이행 청구권은 보험사고일로부터 3년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 그 분강에라는 남아 분양대금은 분양공고에서 지정한 분양대금 남부계좌(분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말합니다.)에 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보험사고 발생 등의 사유로 분양대금 남부중지 또는 변경을 통보 할 수 있으며, 남부계좌를 변경통보한 경우에는 변경된 남부계좌(남부하여야 합니다. 기타 회사가 분양이행시 잔여 분양대금 납부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ᆸ┸ㅋㅜ 회사는 보증채무이행과 관련하여 다수의 피보험자와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 피보험자 중 대표자선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피
- 회사는 보증채무이행과 관련하여 다수의 파보함자와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 파보함자 중 대표자선점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피 보험자는 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대표자를 선정하는 등 보증채무 이행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이에 협조하지 아니 하거나 보통약관에서 정한 통지 및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로 인해 증가된 순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주소로 보증채무 이행방법의 선택을 최고합니다. 피 보험자는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즉시 회사에 변경된 주소를 알려야 하며, 회신기한까지 회신이 없거나 그 기한이 지난 경 우에는 보증채무 이행방법에 대한 선택권을 회사에 위임한 것으로 봅니다.(주소 변경 통지 해태로 인해 회사로부터 최고 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 □ 보증사실 확인 및 기타 유의사항 *등 분양계약에 대한 보증사실 여부는 회사 홈페이지 (www.sgic.co.kr)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며, 분양보증보험 관련 자세한 내용은 보통약관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회사의 증권발급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관계자 및 명칭 자금관리자 시행사 시공사 분양대행사 ____ 더에이치컴퍼니 주식회사 화순현대지역주택조합 신한자산신탁(주) 현대엔지니어링(주) 상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위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 114, 310호 (치평동,랜드피아)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10111-3543801 200111-0526091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원, VAT 포함〉

전 기	㈜지티엘이앤지	538,501,548	
소방, 통신	(유)이에프	500,000,000	
착오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생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 청약신청자 또는 청약당첨자 년 하며 본 입주자 모집공고와 공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	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

(자)건축사사무소 태백